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7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이학영·임호선·박정현

진선미 · 정준호 · 정혜경

안호영 · 김문수 · 문금주

김영배 · 전재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 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제6조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 수립) 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	
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	
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u>3년마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	제6조(실태조사)
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	<u>3</u>
<u>년마다</u>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	<u>년마다</u>
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